

---

**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에 관한  
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[안]**

---

2023. 10.



**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에 관한  
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**

---

#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[안]

---

## I 조사 목적

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(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) 및 「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3조(조사)에 따라 ‘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’에 관한 사무 중 특정 사안 및 행정절차 이행 과정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문제점 인지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.

## II 조사 근거 및 활동기간

- 조사근거
  - 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 및 제50조
  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41조 ~ 제53조
  - 「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3조
  
- 활동기간: 구성일 ~ 2024년 1월 31일까지
  - ※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연장 가능

### Ⅲ 조사 대상 및 범위

- 대 상: 남양주시
- 범 위(조사 사무)
  - 남양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사항
  - 공공하수처리시설 입지 선정 및 행저절차 이행 과정에 관한 사항
  - 「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」에 따라 상정된 의안(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방식 결정)과 관련된 사항

### Ⅳ 조사방법

- 조사대상 사업의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 청취
- 관련 서류 제출요구 및 열람
-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 확인 및 조사
- 조사대상 기관 관계인 증인·참고인 채택 조사

### Ⅴ 조사위원회 구성

- 구성일: 제298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(2023. 10. 19.)
- 위원수: 총 6명(위원장1, 부위원장1, 위원 4명)

위원장	부위원장	위 원		사무보조
		성 명	소관상임위	
선출 예정	선출 예정	김지훈(민) 의원	자치행정위원회	○ 운영전문위원 ○ 운영위원회 의사 담당 ○ 정책지원관
		원주영 의원		
		박운옥 의원	복지행정위원회	
		조성대 의원	도시교통위원회	
		김동훈 의원		
		이진환 의원		

## VI

## 추진일정

회의 일시	내용(안건)	비고
2023. 10. 19. (제1차 회의)	○ 위원장 선임, 부위원장 선임 ○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(의결)	
2023. 10. 24. (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)	○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(의결)	
2023. 10. 30. ~ 11. 6. 중 1일	○ 관련 자료 요구 ○ 증인·참고인 등 출석 요구	제2차 회의
2023. 11. 7. ~ 11. 19. 중 1일	○ 제출자료 내용 검토 및 분석 ○ 업무보고 실시 ○ 관련 자료 추가 요구 ○ 증인·참고인 채택 및 조사	제3차 회의
2023. 11. 20. ~ 2024. 1. 31. (예 정)	○ 제출자료 내용 검토 및 분석 ○ 업무보고 실시 ○ 관련 자료 추가 요구 ○ 증인·참고인 채택 및 조사 ○ 현장확인 및 조사 ○ 지적사항에 대한 최종확인 ○ 조사활동 결과 정리 ○ 조사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및 위원회 채택, 본회의 보고	

## VII

## 소요경비

- 조사위원회 활동경비, 전문인력 지원경비, 증인 등의 지급비용 등은 의회의 예산 범위와 지급기준에 따름.

- 붙임 1. 제출요구서 서식 1부.  
2. 결과의견서 서식 1부.  
3. 선서문 서식 1부. 끝.

(붙임 1)

## 행정사무조사 서류(자료) 제출 요구서

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서류(자료)를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.

2023. . . .

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

의원 (서명 또는 인)

연 번	요구서류(자료)	비고

(붙임 2)

## 행정사무조사 결과 의견서

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사 결과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.

2023. . . .

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

의원 (서명 또는 인)

조사대상	조사내용 및 적출사항	처리의견(시정요구, 처리요구 건의, 기타)

(붙임 3)

## 선 서

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『지방자치법』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,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.

20 . . .

소 속:

직 위:

선서인: (인)